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현행 규정의 일부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일부조항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내용·체계를 재정비하고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지원시책심의권을 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포함)참여확대 등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외국인주민』 용어 반영(안 제2조)

(1)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

(2) 외국인주민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

※ '07년 72만 명으로, '06년(53만명)대비 35%급증

다.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

지원대상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 지원 추가

라. 『구미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기능강화 (안 제7조~안 제9조)

(1) 동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2) 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 규정 신설

(3)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권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포함)과반수참여의무화 등 역할강화.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일부개정안 통보

도 자치행정과-18439(2010. 09. 07)호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외국인들”을 “외국인주민들”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국인”이라 함은”을 ““외국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거주외국인”이라 함은”을 ““외국인주민”이란”으로, “90일이상”을 “90일을 초과하여”로, “외국인”을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을 ““외국인주민 가정”이란”으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외국인주민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있지 않는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국인들”을 “외국인주민들”로, “적응·정착”을 “정착”으로, “거주외국인들”을 “외국인주민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를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6조제1항제7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편성할 수 있다”를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시책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5인”으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 외국인”을 “등 외국인주민”으로, “자로”를 “자, 지역사회에 적극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문기능”을 “자문 및 심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제8조제2호(중전의 제1호) 중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간사)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 지급 등)”을 “(실비변상)”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외국인시책 추진 및 다문화공동체 환경조성”을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구미시외국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구미시외국인지원센터”를 각각 “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인지원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로,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를 “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회”

를 “1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설정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중 “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u>	<u>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u>외국인들의</u>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u>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외국인주민들</u> ----- ----- ----- ----- - <u>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u>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 -----.
1. “ <u>외국인</u>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 <u>외국인</u> ”이란 ----- ----- -----.
2. “ <u>거주외국인</u> ”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u>90일이상</u>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u>외국인</u> 을 말한다.	2. “ <u>외국인주민</u> ”이란 ----- ----- 9 0일을 초과하여 ----- ----- <u>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u> -----.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정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
----- 외국인주민-----

-----.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있지 않는
한-----

-----.

② -----
----- 외국인주민-----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외국인주
민들----- 정

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
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
다.

<신 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
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다.

제5조(지원대상) ①시에 거주하
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하
는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
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착----- 외
국인주민들-----

-----.

②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
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
다.

③ ----- 외국
인주민----- 외국인주민 --

---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
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
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
리법」 등에 따라 -----

-----.

<삭 제>

<삭 제>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생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외국
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 3. (생략)

4. 문화체험·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근로자 귀국정착프로
그램 개발 운영

6. (생략)

7.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
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
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
민-----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
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
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현행과 같음)

7. ----- 외국인주민-----

----- 사항 --

② ----- 각 호-----

---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
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외국인주민지

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민간위원 : 시·도의원, 외국인지원단체관계자, 외국인 등 외국인 복지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생략)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시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5인
-----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

1. (현행과 같음)

2. -----

-- 등 외국인주민 -----

----- 자, 지역사회에 적극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하며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
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신설>

제11조(간사)

----- 각 호-----
----- 자문 및
심의 기능-----.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

3. 외국인주민-----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장-----

-----.

② -----

-----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
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
권을 갖는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삭 제)

제12조(수당 지급 등) (생 략)

제3장 외국인시책 추진 및 다문화공동체 환경조성

제13조(구미시외국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구미시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시책, 민원안내 및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수립 운영한다.

제14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변상) (현행과 같음)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3조(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 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
-----.

② 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

-----.

제14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 수 -----
-.

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구미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

----- 외국인주민 -----

-----.

② ----- 제1항에 따라 -----

-----.

③ -----

----- 1회 -----

-----.

제16조(세계인의 날) ① -----

----- 외국인주민 -----

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 · 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설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
-----외국인주민 -----

4. ----- 외국인주민 -----

③ ----- 제2항에 따른 -----

-----.

제17조(포상) ----- 외국인주민 -----

-----.

제18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 각 호-----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1. (생략)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그 밖에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외국인주민-----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주민 -----

② ----- 외국인주민 -----

-----.

관 계 법 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1. 1.24] [법률 제10374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 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

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74호, 2010. 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